



사회적기업 사후관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재발급 신청 사유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변경



일반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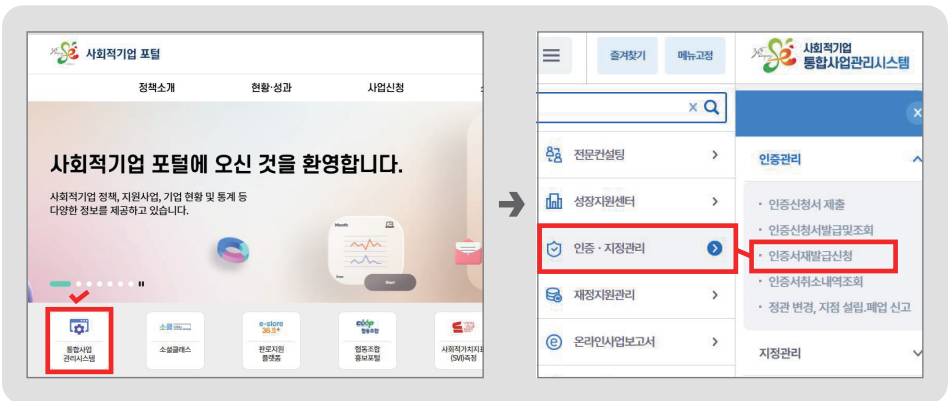
사회적목적실현 유형 변경



육성전문위원회 검토(심의)사항

재발급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포털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재발급 처리 절차



재발급 필요사항 및 제출서류

재발급 사항	제출 서류	참고사항
① 기업명 (기관명)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된 기업명 반영분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or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변경된 기업명 반영분 (말소사항 포함)
	회의록	'기업명' 변경 안건으로 작성된 회의록 (참석자 서명 필수)
	정관 사본 및 공증 확인서	14일 이내 정관변경 신고 필수 온라인 신고가능
② 소재지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된 소재지 반영분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or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변경된 소재지 반영분 (말소사항 포함)
	회의록	'소재지 변경' 안건으로 작성된 회의록 (참석자 서명 필수)
	정관 사본 및 공증 확인서	14일 이내 정관변경 신고 필수 온라인 신고가능
	※ 정관상 소재지 기재 수준에 따른 신고 여부 [Case1] 정관 내 기재 : 경기도 성남시(시 단위) → '구' 간 이동시 정관변경 불필요 [Case2] 정관 내 기재 : 성남시 수정구 157(구 단위) → '구' 간 이동시 정관변경 필수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 문서	법인 소유 건물은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대장 제출	
③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된 대표자 반영분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or 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or 설립허가증(비영리법인)	변경된 대표자 반영분 (말소사항 포함)
	회의록	'대표자 변경' 안건으로 작성된 회의록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 상황이 변동되었을 경우 제출
	사임서	공동대표인데 한 명이 사임 하는 경우
④ 조직형태 변경	사업자등록증	신설법인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소멸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or 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or 설립허가증(비영리법인)	변경된 기관명 반영분 (말소사항 포함)

재발급 필요사항 및 제출서류

재발급 사항	제출 서류	참고사항
④ 조직형태 변경	회의록	'조직형태 변경'안건으로 작성된 회의록
	이사회 명부, 주주명부	상법상회사일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소멸법인, 신설법인 각각 제출
	급여대장, 급여이체 내역	신설법인의 경우
	정관 사본 및 공증 확인서	14일 이내 정관변경 신고 필수 온라인 신고 가능
	법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공증 받은 것
	[사업단이 분리 독립하는 경우] 사업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신규법인 회의록	'독립법인 전환'안건으로 작성된 회의록과 신규법인의 회의록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및 설립인가증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과 법인설립인가증 제출

*신청 월 직전 6개월간 '변경 전 유형'과 '변경 후 유형'의 인증요건이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신청 가능

⑤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변경	변경 신청서	서식 작성
	회의록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변경' 안건으로 작성된 회의록
	정관 사본 및 공증 확인서	14일 이내 정관변경 신고 필수 온라인 신고 가능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서식 작성
	유급근로자 명부	서식 작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증빙 서류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
	재무제표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받은 자료

“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사유 발생시

'정관' 또한 '사회적기업포털'을 통해 14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함

”

정관 등 변경 신고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정관 등)

정관 등 변경 신고사항

- 목적, 사업내용
-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지부, 자원조달, 회계



정관 등 변경 신고 신청 방법

정관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포털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A composite image showing the user interface of the Social Enterprise Portal and the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On the left is the '사회적기업 포털' (Social Enterprise Portal) with a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button highlighted in a red box. An arrow points to the right, showing the '통합사업관리시스템'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interface. In this system, the '인증·지정관리' (Authentication and Designation Management) menu item is highlighted in a red box, and a sub-menu item '정관 변경, 지정 설립, 폐업 신고' (Articles of Association Change, Designation Establishment, and Termination Report) is also highlighted in a red box.



사회적기업이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관 등 변경 신고 제출서류

01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비영리민간단체·협동조합·사업단

제출 서류	참고사항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서식 작성
이사회 등 회의록	‘정관 변경’ 안건으로 작성된 회의록
변경된 정관	공증 필요
신구대표표	정관 개정사항 표기 서식 작성

* 변경일 기산점 |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

02 →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제출 서류	참고사항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서식 작성
이사회 등 회의록	‘정관 변경’ 안건으로 작성된 회의록
신구대표표	정관 개정사항 표기 서식 작성
주무관청 정관 변경 허가(인가)서	허가서(인가서) 제출시 공증한 것으로 간주

* 변경일 기산점 |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을 허가(인가)받은 날

03 → 사회적기업 지부 설립·폐업 등의 신고

제출 서류	참고사항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서식 작성
이사회 등 회의록	지부 ‘설립 및 폐업’ 안건으로 작성된 회의록
사회적기업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점에 관한 사항>에 지부(지점, 분사무소) 등기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본점, 지점 모두 제출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기타사항

단순 지점 설립

별도로 지점 신고해야만,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관 포함 및 실적 인정 가능

폐업 미신고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은 없으나 지점 관련하여

폐업 지연신고

정관 상 조항 변경시 정관변경 신고 필수!

사업보고서 제출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보고 등), 23조(과태료),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사업보고서란?

사회적기업의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말, 10월 말까지(연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목적

개별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 확보

제출 대상 및 시기

인증 사회적기업

전년도 12월 말 기준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4월 말 제출

(전년도 1~2월 실적)

당해 연도 6월말 기준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10월 말 제출

(당해연도 1~6월 실적)

예비 사회적기업

전년도 12월 말 기준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5월 말 제출

제출처: 소관부처

전년도 12월 말 기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5월 말 제출

제출처: 관할자치단체장

사업보고서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포털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내용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of the 'Social Enterprise Portal' (사회적기업 포털) and the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통합사업관리시스템). The left screenshot shows the portal's main page with a navigation bar and a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button highlighted in a red box. The right screenshot shows the system's menu with '사업보고서 등록조회' (Business Report Registration/Inquiry) and '온라인사업보고서' (Online Business Report) highlighted in red boxes, with a red arrow pointing from the portal button to the online report option.

사업보고서 제출절차

절 차	주관기관	내 용
1 메뉴얼 제작 및 배포	고용노동부, 진흥원	* 사업보고서 작성 메뉴얼을 제작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진흥원, 사회적기업에 배포
2 작성방법 교육(1차)	고용노동부, 진흥원 (본원, 통합/일반센터)	* 사업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진흥원(본원) → 진흥원(통합/일반센터), 지방고용노동관서
3 작성방법 교육(2차)	진흥원 (통합/일반센터)	* 사업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관내 사회적기업 대상)
4 사업보고서 제출 (온·오프라인)	사회적기업 →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제출 시 양식 참고
5 사업보고서 접수, 검토 및 사본 송부	지방고용노동관서	* 제출된 사업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접수된 오프라인 제출 건은 진흥원(본원)으로 송부 필요
6 사업보고서 목표표 및 검토서 송부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부, 진흥원(본원)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업보고서 목표표 및 검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와 진흥원(본원)에 송부
7 데이터 확인 및 성과분석(기초·심층)	진흥원(본원)	* 사업보고서 데이터 확인 및 성과분석 실시 (4월말 제출 사업보고서만 해당) * 사업보고서 DB화
8 사업보고서 최종관리	고용노동부	* 사업보고서 최종본 관리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작성항목

기업현황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목적 재투자

지원내역

재정성과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기타(창의·혁신)

연계현황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및 전전년도 재무제표 일체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해당시
제출

정관 변경시 정관 사본

지점 변동시 본점 및 지점 현황

사업단인 경우 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류

-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전년도 12월말 기준)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당해 1~12월)
-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전년도 1~12월)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0월 제출 사업보고서

작성항목

기업현황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기타(창의·혁신)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제출

정관 변경시 정관 사본

지점 변동시 본점 및 지점 현황

사업단인 경우 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류

-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당해 6월말 기준)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당해 1~6월)
- 사회서비스제공 증빙서류(당해 1~6월)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